

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8. 9. 18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 원 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의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출석일시 : '98. 9. 28 ~ 9. 29 (2일간)
-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- 출석대상 :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·국·원장, 본부장, 중평출장소장 이상.